#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급 구분)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임용권자)

제7조(신규채용)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제10조(시보임용)

제11조(시험실시기관)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제14조(승진)

제15조(근속승진)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8조(보훈)

제19조(특별위로금)

제20조(교육훈련)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3조(복제)

제24조(복무규정)

제25조(정년)

제26조(심사청구)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제28조(징계위원회)

제29조(징계 절차)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4조(벌칙)

## 소방공무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임용령〉

## 제2조(정의)

-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시·도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 제3조(계급 구분)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 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용령〉

####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개정 2020. 3. 10.>
- ②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 소방청 차장
- ③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 ④ 위원 :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16.>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1. 5.>
- ② 직무대행 : 위원 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

####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저하다

##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임용권자)

-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 ③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⑥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대통령 → 소방청장
-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
-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
- ② 대통령 → 시·도지사
-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
- ③ 소방청장 → 중앙소방학교장
- 1.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개정 2020. 3. 10.>
- ④ 소방청장 → 중앙119구조본부장
- 1.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개정 2020. 3. 10.>
- ⑤ 중앙119구조본부장 → 119특수구조대장
-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
- ⑥ 소방청장 → 시·도지사 <신설 2020. 3. 10.>
  - 1.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⑦ 시・도지사 →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 1.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 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
  - 2.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개정 2021. 10. 14.>
- ⑧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0.>
- ⑨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조의2(임명장)

-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 한다.
- ③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 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 제4조(임용시기)

-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 1.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 3.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0. 3. 10.>

##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 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①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6. 3.>
- ②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 관련)

순번	발령구분	<u></u>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임	8	인사기록카드	1통	소방령 이상은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종합병원장 발행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시	·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통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2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소방령에의 승진임용에는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및	드	신규채용 구비서류 첨부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3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 • 진단	난서 · 직권면직사유설	
			명서 또는 기타직권면적	식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또는 기티		
			빙하는 서류	1통	
		정년퇴직	없음		
4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ㆍ폐지 및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_	
				1통	
6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u> </u>	<b>5-2-2</b>	H _1	사망경위서	1통	
7	휴직 및	목직 -			진단서의 경우에는 종합병
					원장, 보건소장 및 「공무원
			는 서류	1통	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8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9		전·출입	전・출입동의서 1통	
1	0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 기간산출표 1통	법 제10조제3항 해당자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① 임용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 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 3. 13.>
- ③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20. 3. 13.>

####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 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 6.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3.>

### 제5조(발령대장)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②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 제6조(전력조회)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 ②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령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인사기록관리자)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
- ②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 ③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2. 선서문
- 3. 신원조사회보서
-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 6. 경력증명서
- 7. 전력조사회보서
-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3. 13.]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하다.
-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④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 1. 분실한 때
  -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 3, 13.>
  -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도 소속인 경우: 시·도지사
-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 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3년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③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 1. 인사기록관리자
  -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3. 본인
-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 3. 13.>

###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 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3., 1997. 4. 19.>

## 제7조(신규채용)

-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 1.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21세 이상 40세 이하)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1.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4.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10.>
- ③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④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 5.>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부문별	특수기술
화재조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방정·소방헬기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조종및정비	
장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자계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급	응급처치기술
회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⑤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⑦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⑧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⑨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3. 10.>
  -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 · 군지역
  -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 ①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0. 3. 10.>
-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⑥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
그 요 도 다	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중 전기·전자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소 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 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 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 정한다)
자동차 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 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비고: 채용계급

- 1. 의사: 소방령 이하
-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 · 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 3.]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7. 7. 26.〉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8 7	8 년	1	2	3	4	5	6	7	8	9	10
악력	남	45.3~	48.1~	50.1~	51.6~	52.9~	54.2~	55.5~	56.8~	58.1~	60.0

		48.0	50.0	51.5	52.8	54.1	55.4	56.7	58.0	59.9	이상
(kg)	여	27.6~	29.0~	30.3~	31.2~	32.0~	33.0~	33.8~	34.7~	35.8~	37.0
	97	28.9	30.2	31.1	31.9	32.9	33.7	34.6	35.7	36.9	이상
	남	147~	154~	159~	166~	170~	174~	179~	186~	195~	206
배근력	日	153	158	165	169	173	178	185	194	205	이상
(kg)	여	85~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21
	97	91	95	98	101	104	107	110	114	120	이상
앉아	남	16.1~	17.4~	18.4~	19.9~	20.7~	21.7~	22.5~	23.3~	24.3~	25.8
윗몸	日	17.3	18.3	19.8	20.6	21.6	22.4	23.2	24.2	25.7	이상
앞으로		10.5	00.7	01.7	00.7	00.5	04.0	05.5	00.0	00.0	00.0
굽히기	여	19.5~	20.7~	21.7~	22.7~	23.5~	24.9~	25.5~	26.2~	26.8~	28.0
(cm)	,	20.6	21.6	22.6	23.4	24.8	25.4	26.1	26.7	27.9	이상
제자리		223~	232~	237~	240~	243~	246~	250~	255~	258~	263
멀리	남	231	236	239	242	245	249	254	257	262	이상
뛰기		160~	165~	169~	173~	177~	181~	185~	189~	194~	199
1	여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3	198	133 이상
(cm) 윗몸		104	100	172	170	100	104	100	193	190	52
1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일으											이상
키기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회/분)	·										이상
왕복	남	57~	60~	62~	64~	68~	72~	75	76	77	78
오래	Ц	59	61	63	67	71	74	, ,	, ,		이상
달리기	여	28	29~	31	32~	34~	37~	40	41	42	43
(회)	~	20	30	31	33	36	39	40	41	42	이상

# 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게임한단기단표(제28도제28 한단/							
	국가・지방공무	과 리			교육공무원		기버키키키
계급	원 또는	경찰	군인	초・중・고등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정부관리기
	별정직공무원	공무원		학교 교원	교원	교원	업체
ᆺᄞᅡᅿ	F.3.		ᆺ러	10.00동보	13~18	11~16	과장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호봉	호봉	차장
소방경	6급		대위	14~17	11~12	9~10	계장, 대리
그 명경	(3년 이상)		네게	호봉	호봉	호봉	(3년 이상)
소방위	c I	경위	중위・소	11~13	9~10	7~8	계장, 대리
7.21	6급	/6'∏ 	위・준위	호봉	호봉	호봉	भारा, पाप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8호봉	6호봉	평사원
7.8.8	/ 日	7671	8/1	호봉	이하	이하	(3년 이상)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평사원
工。正	0 8	70.0		호봉			-8/1 E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3호봉			평사원
10/1	<b>0</b> H	12.0	(병)	이하			0.15

## 비고

-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 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6.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
소방 분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조경 문학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
	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
	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 • 간호학과 •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와약 군약	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과 ·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신속 문약  신속적・신속역적・신속이역적역 그 밖에 의적 비사인 역적을 들답인 /	건축 분야	건축과 · 건축학과 · 건축공학과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학
--	-------	-------------------------	---------------------

비고

-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 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 ⑦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6. 3.〉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
세격	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78 9	수 있어야 한다.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혈압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
	어야 한다.

-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⑤ 법 제7조제2항제3호(임용예정직에 상용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3.>
- ⑨ 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 ⑩「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3.>

③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경력경쟁채용등)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9.>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 ①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 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6, 3.>
  - 1. 최종학력증명서 2통
  - 2.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 3. 경력증명서 2통
  - 4.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 5.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5장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 1. 취업보호대상자
-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3. 연령이 많은 사람

##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①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신규채용방법)

-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 5.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 ③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임용의 유예)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 1. 학업의 계속
  -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

##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①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 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을 시킬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22. 4. 5.>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 4. 직제의 신설·개편·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

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 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3, 10.>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3.>
-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3.>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0조(전보의 제한)

-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1.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 2.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②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③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5.]

##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4.5>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28>
-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퇴직 소방공무원, 5급 공무원 및 사법고시 합격자)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자격증, 연구실적 또는 전문기술교육자, 외국어 능통자, 경찰공무원)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

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10>

- ④ 법 제7조제2항제8호(의용소방대원)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2021.1.5>
- ⑤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다.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용령〉

###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 ① 소방청장이 시·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 3. 10.>
- 1. 시·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 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 2. 시·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 간 교류하는 경우
- 3.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인사교류의 인원(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제외)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 장은 시·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③ 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3. 10.>
- ④ 소방청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⑤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⑦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3. 10.>

#### 제30조(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파견기간은 1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파견기간은 2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파견기간은 1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파견기간 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③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 야 한다.(제1항제4호, 6호, 7호 제외)
- ④ 소속 소방공무원(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1.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제1항 4호, 5호의 교육훈련 파견제외)
  - 2.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3.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0조의2(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 3. 10.>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④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 ①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 ②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③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 ①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 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1년 이상의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 2. 제30조제1항제4호(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 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 제30조(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오
- 4.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위임포함)을 행사하 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임용권(위임 포함)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 시·도지사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2. 소방청장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 3. 시·도지사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④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10조(시보임용)

-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①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②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시험실시권)

- ①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③ 시·도지사는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 4. 5.>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실 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① 시험실시기관 또는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②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시험의 방법)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의 방법 <개정 2022. 4. 5.>
  -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 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③ 검정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3. 10.>

#### 제37조(시험의 구분등)

-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 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0>
  -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 정 2020. 3. 10.>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②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 ①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 ①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 점으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6. 3.〉 자격증 등 소지자 기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기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업무관련 분야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	4. 소방안전교육사	<ol> <li>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li> <li>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li> <li>「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li> </ol>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	, 증명을 받은 사람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사무관 분야		자 증명을 받은 사람	컴퓨터활용능력 1급	증명으로 한정한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ol> <li>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li> <li>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li> <li>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li> </ol>	<ol> <li>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li> <li>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li> <li>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li> </ol>	<ol> <li>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li> <li>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li> <li>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li> </ol>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 어 중국 어		9. G-TELP Level 2 75점 이왕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 비고

- 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 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 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 정 2022. 6. 3.>
  -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1통
  -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 2. 경력증명서 1통
  -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 ④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4.>
  -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 ⑤ 시험실시권자는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①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23.>
- ② 시·도지사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11. 23.>

##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 3.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④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 ⑤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8조(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12. 1.〉

##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28조 관련)

구분	과목수	필기시험과목
사비러 미 사비거 스키기침	3	행정법, 소방법령 I·Ⅲ,
소방령 및 소방경 승진시험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소방위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소방장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비고

- 1. 소방법령 I: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소방법령IV: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5.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 ④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 ⑤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승진임용예 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 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시험실시권자는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험승진임용은 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제44조(필기시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2.4.5>

-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개정 2022. 11. 29.〉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1.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00 - 40 0 12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최그가 취비 어지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한국사, 헌법, 영어		경제학 중 2과목	

####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비고

-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4]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시 험 과 목		
계열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 방청장이 정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 〈개정 2022. 11. 29.〉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계급	분야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한국사,				
	필수	영어,				
		행정법,				
소방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소방령		건축공학개론,				
	선택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한국사,				
	필수	영어,	항공법규,			
	21	행정법,	항공영어			
		소방학개론	미케시큐			
소방경		물리학개론,	비행이론, 항공기상,			
		물니의계근, 화학개론,	왕 o 기 장, 항공역학,			
소방위		최학계 <del>년</del> , 건축공학개론,	항공기체,			
	선택	현 및 연기 ( 기기 년 ) 형법,	항공장비,			
		경제학	항공전자,			
		중 2과목	항공엔진			
		0 - 1 1	중 1과목			
		한국사,	- , ,			
	필수	영어,	항공법규,			
		소방학개론,	항공영어			
		소방관계법규	.1 -1 1 =			
소방장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소방교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앙증장미, 항공전자,			
			왕 o 선사, 항공엔진			
			중 1과목			
		한국사,	0 1-1-1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द्वारो	필수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소방사		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
H) ¬		소방관계법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 비고

-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
-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6] 〈개정 2022. 4. 5.〉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4조제1호 관련)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 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625점 이상	550점 이상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PBT	PBT	PBT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530점 이상	490점 이상	470점 이상	
토플 (TOEFL)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TEPS)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말한다.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정하여 고시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9] 〈신설 2022. 4. 5.〉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제2호 관련)

	(**   + + + + **   + + + + + + + + + + +			
		기준등급		
		소방정		
	기위시 구크	소방령	소방장	
	시험의 종류	소방경	소방교	
		소방위	소방사	
		(소방간부후보생)		
친그가느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2급 이상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개정 2020. 3. 10.>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 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 호를 준용하다.
-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1. 소방공무워으로서의 적성
-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전문지식 · 기술과 그 응용능력
- 4. 예의 · 품행 · 성실성 · 봉사성
- 5. 창의력 ·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 로 합산한 성적
-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마.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바.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사.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소파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 시험실시권자가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 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 다. <개정 2020. 3. 10.>

②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응시수수료)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 · 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 · 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 · 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22, 4, 5.>
-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 ③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④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 다.

#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①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 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2. 6. 3.]

###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 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 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 재해야 한다. <개정 2022. 4. 5.>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정계위원회에 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①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승진)

-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 하여 승진임용한다.
-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0. 3. 10.>
- ③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 ④ 소방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
- 2.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

####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①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순직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②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20. 3. 10.>

-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2020.3.10>
  - 1. 수 20퍼센트
- 2. 우 40퍼센트
- 3. 양 30퍼센트
- 4. 가 10퍼센트
-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 과 같다.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8.〉

##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u>_                                    </u>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소속 국장	차장	
7.8.8	관·국 외		소속 과장	^1 °6	
중앙소	_ 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	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정			
소	소방서				
지방소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도 부시장	
서욱종형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소방	
				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119특	수대응단				
소방체험관					
	관・국			소속 국장	
소방청	관·국 외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그리샤비서그이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서	소방령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및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エュ ハ・エ エッモナッ
119특수대응단	소방경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국			소속 국장
관·국외	소방위 소속 과장 이하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न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센터	
		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	
소방서		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소방서장
	소방위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	
	이하	방행정과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도둑 구시성(4성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 비고

-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 ① 수 · 우 · 양 · 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1. 수: 55점 이상 ~ 60점
  -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 4. 가: 33점 미만
-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③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 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④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 의 최고점으로 한다.
-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본조신설 2020, 1, 3,]

##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③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 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제9조(경력평정)

-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 ② 경력평정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③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31.> 1 기본경력
  - 가. 소방정·소방령·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 나. 소방위 · 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 2. 초과경력
    -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 다. 소방경 · 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 마. 소방교: 기본경력 전 1년간
    -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 ⑤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규정 시행규칙〉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1. 3.]

##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 정해야 한다.<개정 2023. 3. 31.>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 ① 경력평정은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8.>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1. 18.〉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분	계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본 경력	소방정	4년	0.541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6.49 12.98 19.48 26.00
	소방령 및 소방경	4년	0.458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5.50 10.99 16.49 22.00
	소방위 및 소방장	3년	0.611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7.33 14.66 22.00
	소방교	2년	0.917점	기간 1년 2년 점수 11.00 22.00
	소방사	1년 6개월	1.222점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 14.66 22.00
	소방정	3년	0.111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1.33 2.66 4.00
	소방령	5년	0.050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 0.60 1.20 1.80 2.40 3.00
초과	소방경 및 소방위	4년	0.062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6개월	소방장		0.166점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 1.99 3.00
	소방교	1년	0.250점	기간 1년 점수 3.00
	0.50점	기간 6개월 점수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8.]

###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를 평정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 2. 소방령·소방경·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 가. 관리역량교육성적
- 나. 전문교육훈련성적
- 다. 직장훈련성적
- 라. 체력검정성적
- .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 ②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 2. 소방령·소방경·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 정성적 5점
  -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 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31.>
- ④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개정 2023. 3. 31.>
-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규정 시행규칙〉

#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3.3.31.>
- 1.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훈련과정
- 가. 신임교육과정
- 나. 전문교육훈련과정
- 2. 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직장훈련성적은 직장훈련의 성적 중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개정 2023. 3.
- ④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체력검정성적)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 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의2(가점평정)

- ①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8.>
-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 1. 3.>
-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 1. 3.>
-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
-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0. 3. 13.>
-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 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 11. 18.>
- ⑦ 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2021, 11, 18.>
- ⑧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8.>

## 제16조(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평정자는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3.]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① 소방정: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
  - •소방령 이하 계급 :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는 경우 <개정 2021. 8. 31.>
-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2.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 3.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 ②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사람 <개정 2023. 3.31.>
-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 3. 시 ·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 도지사
-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 무원: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 ③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 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개정 2023. 3.3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3.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③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3. 13.>
  - 1.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 정점의 평균
- ④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45점)/2
  -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 평정점 + 45점)/2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

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3. 13.>
  -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⑥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 간평정점 + 2.67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 간평정점 + 2.67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 간평정점 + 2.5점)/2
    -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 간평정점 + 2.5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 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 ⑦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 ⑧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 3. 31.>
  -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 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 2.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 제12조(동점자의 순위)

-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②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 2. 퇴직자가 있는 경우<신설 2023, 3.31.>
-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4.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 5.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6.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신설 2023. 3.31.>
-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개정 2023. 3.31.>
-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신설 2023. 3.31.>
-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신설 2023. 3.31.>
- ②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3. 3.31.>

#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3. 31.>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 4. 개인별 인사기록
-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 8. 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의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정: 4년
- 2. 소방령: 3년
- 3. 소방경: 3년
- 4. 소방위: 2년
- 5. 소방장: 2년
- 6. 소방교: 1년
- 7. 소방사: 1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은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8. 31.>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의 기간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 1호(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제5호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 저히 어려운 자)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방청장 등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 우
-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

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8. 31.>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31.>
- ⑤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0. 3. 10.>
-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 ⑧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0. 3. 10.>
-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 ②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8. 31.>
-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 5.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 6.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 8. 31.>
- ③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5조(근속승진)

- ①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 ②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③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6조의2(근속승진)

- ① 근속승진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1.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 ③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8. 31.>
-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23. 3. 31.>
- ⑥ 임용권자는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 ⑦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 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 ⑧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개 정 2023. 3. 31.>
- ⑨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31.>

#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 ①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 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 ③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0.>
- ③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3. 10.>
- ④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 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 5.>

##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0.>
-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 감으로의 승진심사
-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 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 4.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 ①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 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명부다. [전문개정 2021. 11. 23.]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 〈개정 2021, 11, 23,〉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인 사람의 수(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제6조제1항각호의 1(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3. 시험의 부정행위를 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 ②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 ①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 2.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객관평가 최고 점과 최저점의 편차)
  - 3. 심사환산점수와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 ④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승진심사의결서
  -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 ②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 ①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②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 ①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심사승진임용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①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에 따른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포상을 받은 사람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 3.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 4.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 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 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순직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 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②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10.>

- ③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10.>
- ④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10.>
- ⑤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3. 10.>

#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특별승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20. 3. 10.]

#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 ① 제38조제1항제5호(순직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공무중 사망)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임용비율, 인원수 책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승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31.>
- ②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 ③ 제38조제1항제4호(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따른 특별승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재산상 이득, 횡령 등)의 징계 사유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0.>

#### 제42조(특별승진심사)

-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 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3. 10.>
- ③ 제38조제2항(공무 중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①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 · 반투표로써 한다.
- ③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 제43조(대우공무원)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 1. 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5년 이상
- ②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②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 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 제59조(보훈)

- ①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소방청장은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 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특별위로금)

-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60조(특별위로금)

- ① 특별위로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급 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 4.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② 위로금은 공무상 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 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0. 3. 10.>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8]

#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60조 관련)

1. 미출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frac{계급별기준호봉}{180일} \times 1.5 \times 미출근일수$$

2.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급액= 
$$\frac{$$
계급별기준호봉  $}{180일} \times 1.5 \times 180일 + \frac{$ 계급별기준호봉  $}{900일} \times 2 \times (미출근일수 - 180일)$ 

비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업무에 복귀한 날
-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 는 확정된 날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②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
-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 2. 입·퇴원확인서
-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 제20조(교육훈련)

-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전부개정 2023.3.31.]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4. "위탁교육훈련"이란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 · 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⑦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 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등)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방법
	가. 신임교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 련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 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1. 기본교 육훈련	나. 관리역량 교육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 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 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	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의 교육으로 실시
다. 소방정책 관리자교육	훈련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소방령 이하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3. 7]	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모든 계급	직장훈련으로 실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 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시
4.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	모든 계급	

#### ※ 비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계획)

-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교육훈련의 목표
  -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 ①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 2.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 3.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 4.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 5.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 6.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 ②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 ①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② 확인 ·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무복무)

- ① 신임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 2.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u>1</u>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의무복무 개월수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전액

#### ※ 비고

-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2.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3.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기간・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2. 교육훈련과정
-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 4.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 5. 교재 편찬계획
-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 7.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방기관장등)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③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 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7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 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8조(퇴교처분)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 제78조(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기관장등은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

-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1. 강의 또는 훈련
  - 2.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 3. 교육훈련과정의 설계 · 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4.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수 있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②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4.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5.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 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제26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시설
-----------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 ※ 비고

-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고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1. 입교 퇴교 상벌에 관한 사항
  -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7. 교수요원 등의 선발 · 위촉 ·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직장훈련

##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 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 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 2.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4.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 5.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부서별 ·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 ②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1. 직장훈련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 · 교재 등의 준비
-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②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4장 위탁교육훈련

## 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 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 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 5.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 6. 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7.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훈련에 필요한 학력 · 경력을 갖춘 사람
-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2.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 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 게 해야 하다.

###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복제)

-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20. 3. 10.>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 제3조(복무 자세)

-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비상소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 · 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6조(교대제 근무)

-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 ② 소방기관의 장은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8.>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할 때

##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전문개정 2020. 3. 10.]

#### 제11조(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3. 10.]

##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소방감: 4년소방준감: 6년소방정: 11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 ②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을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26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 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1. 25.>

-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 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 25.>
-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 1. 25.>
-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해촉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제28조(징계위원회)

-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 위원회에서 한다.
-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 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 ③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0, 14.>

## 제29조(징계 절차)

- ① 소방공무원의 정계는 관할 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해임은 관할 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한다.
- ②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 위원회
  -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3.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10.>

#### 제1조의2(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 ① 임용권자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2020. 3. 10.>
-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②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성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다.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5.>
- 1. 제2조제1항(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 2. 그 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수 있다. <개정 2022, 3, 15.>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1.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 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① 징계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다.

#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1, 5.>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 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 ① 소방공무원의 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0.>
-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 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워 인사기록카드 사본
-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 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 ③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중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10.>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 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 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 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 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 ⑥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⑦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 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 ⑦ 감사원은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 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 <개정 2022. 3. 15.>
-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2. 증거의 판단
- 3. 관계 법령
-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 ④ 서면 의결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 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징계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 (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①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징계등의 집행)

- ①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 <개정 2020. 3. 10.>
-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 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 한다.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 3.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다.

#### 〈공무원보수규정〉

###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 3.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